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22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7일

발 의 의 원 : 이성혁 의원

찬 성 의 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제1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1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는 지원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복지 및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지원센터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이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④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금액 및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신청) ①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입소 시설 종사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3. 대리 신청인의 대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대리 신청의 경우)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적절하게 지급된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90일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학교 복귀 및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급연령을 초과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신청, 사용 및 자격을 유지한 경우
5.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②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지급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7조제2항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입지기준

지원센터는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규모

지원센터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다. 1개 이상의 상담대기실

라. 1개 이상의 휴게실. 다만, 다목에 따른 상담대기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1개 이상의 교육실

4. 전문인력 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가. 지원센터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겸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